

공정위, 5대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촉진방안 발표

- '98년 12월중 5대 기업집단의 탈법적인 채무보증실태 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5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자금시장의 돈을 독식하는 등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5대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채무보증의 조기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철(田允喆) 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화) 「5대 그룹 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12월초에 5대 그룹의 탈법적인 채무보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상장사의 전체 회사채 발행액 중 5대 그룹이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자제한제도가 폐지된 지난 '98년 2월 24일 이후 지난 9월 20일까지 6~30대 그룹의 타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440억원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5대 그룹의 타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은 3조 4천억원이나 급증하는 등 5대 기업집단으로의 자본집중 과정에서 우량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부실계열사에 지원하는 것과 같이 부당지원행위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자총액의 증가원인이 대부분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인 점을 감안할 때 출자총액의 급증이 아직까지는 무분별한 사업다각화의 진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계열사들이 외부차입에 의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공정위는 이러한 폐해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5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

거래 조사의 강화와 채무보증의 조기해소를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대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반기감사보고서(半期監査報告書), 각종 공시내용 등 관련정보를 항시 모집·분석하고 거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출자에 의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의 근절을 위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수정·보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공정위는 금년 11월중 5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담당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채무보증의 해소실적·계획 및 해소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등 채무보증의 조기해소를 독려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 3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와 관련하여 그룹별로 올해말까지의 채무보증 해소실적과 앞으로의 해소계획을 내년 2월 15일까지 제출받아 분기별로 그 실적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98년 12월중에 5대 기업집단별로 채무보증이 많은 3~4개 업체를 선정하여 신규채무보증 여부나 이면보증 또는 백지어음에 의한 보증 등 탈법적인 채무보증 실태를 조사할 예정으로 있으며, 차주회사(借主會社)의 신용이 우량한 경우나 부실한 회사가 보증한 경우 등 실익이 없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해지하고 채무보증을 시장가치로 평가하여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BW))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안 등은 금감위 등과 협력하여 채무보증의 조기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분사화¹⁾와 관련하여 분사화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바람직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운용시에 이러한 경쟁촉진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분사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이와 동시에 분사화 과정에서 부당하게 기존 독립기업과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공정거래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율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분사화의 촉진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재계측의 요구에 대하여는 분사화가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의 틀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법령개정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분사화와 관련하여 분사회사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규제 여부에 대해서 공정위는 분사회사의 설립시 기존 종업원의 출자만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모기업의 출자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모기업의 출자비율이 높더라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고 분사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분사화된 기업의 경우 자생력이 부족하여 모회사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분사화된 기업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회사로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중점심사대상²⁾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의 판정시 중점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분사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서 규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정위는 분사화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쟁사업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고, 비주력사업의 분리를 통해 주력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대기업의 사업부에서 독립법인화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는 바람직한 효과가 기대되므로 분사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중점심사대상일 경우에도 부당성의 판단시 분사의 경쟁촉진적 효과를 고려하여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중소기업 등 기존 독립기업과의 경쟁을 훼손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분사를 악용하여 위장계열사를 유지시킬 경우 채무보증 금지 위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방침으로 있다.

- 1) 사업 구조조정 방식의 하나로서 여러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특정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별도의 회사로 신설·분리(spun-off)하거나 매각(divesture)하는 것을 말하며, 분사화되는 사업부문은 기존 경영진(MBO(Management Buy Out) : 既存經營陣이 인수하는 경우)이나 종업원(EBO(Employee Buy Out) : 종업원이 인수하는 방식)이 중심이 되어 인수할 수 있다. 기업은 분사화를 통해 비주력사업을 정리함으로써 핵심역량에 경영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종업원이 중심이 되어 분사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노사마찰 없이 고용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2) 중점심사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원행위 기준	지원규모 기준	
	지원금액	거래성 거래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특수관계인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 1000억원 · 자산 : 10억원 · 인력 : 1000명

◆ 30대 기업집단의 주요 분사 사례 ◆

기업집단	회사명	분 사 회 사			
		회사명	영위업종	자본금 (백만원)	지분현황
현 대	현대전자	멀티캡	PC	1,570	종업원 40.1%
		HDT	비디오CD	1,480	-
		현대통신사업	홈오트메이션	3,000	-
		현대사무기기	복사기	500	-
		미래SI	영상시스템	500	-
		DVS코리아	비디오CD	2,000	-
삼 성	삼성전관	빛샘	LED제조판매	600	삼성전관 19% 종업원 71%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전자제품수리	3,000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영소재	주강, 소재	1,825	신보창투, 삼성중공업
		삼우공영	후생관리 용역	700	종업원
	삼성항공	케녹스카메라 서비스	카메라 A/S	300	종업원 42%
	삼성물산	토지택	물류관리대행	300	종업원 75%
대 우	대우전자	벨로체	디지털피아노	200	종업원 100%
L G	LG산전	한국E&E	주유기, 세차기	1,000	해덕강업, 종업원
		대광산전	자동창고영업	50	종업원
		한국수송기산업	자동파레트	50	종업원
		Y&L시스템	C&C A/S	100	종업원
한 화	한화기계	AFG베어링	베어링제조업	255,477	AFG 70%
	한화에너지	경인해운	해상운송업	1,000	한화 100%
효 성	효성T&C	동양인더스트리	냉장고용시료	200	종업원 100%
고 합	고합물산	해피론홈패션	침장류도소매	100	류경희 51%
		해피톤리스	청소용품리스	70	윤재민 60%
동 부	동부건설	동건산업기계	건설중장비	300	종업원
	동부고속	동부아트	미술품전시업	100	종업원
		동부관광	관광사업	100	종업원
새 한	새한미디어	대동미디어	오디오테이프 제조판매	50	대동정밀 50%